



가업승계지원제도의 이해

- ▶ 발표자 : 서진우 본부장
소 속 : 정엘의 가업승계연구소

I 가업승계

기업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 증여 또는 매매 등을 통하여 그 기업의 소유권과 경영권 및 기업의 무형자산(경영노하우, 기술, 창업자의 가치관 등)을 후계자 등에게 이전하는 것



‘가업승계는 가업을 100년 장수기업으로 만드는 제2의 창업’

[국민경제적 차원]

1. 각 기업의 기술 및 경영노하우의 지속 및 발전 → 이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2. 고용유지 및 신규창출 (중소기업이 한국 고용시장의 85% 이상을 담당)

[기업주 차원]

1. 피땀으로 일군 회사의 지속 및 발전 → 창업주의 업적과 가치관 승계
2. 유가족 및 종업원들에게 안정된 미래를 상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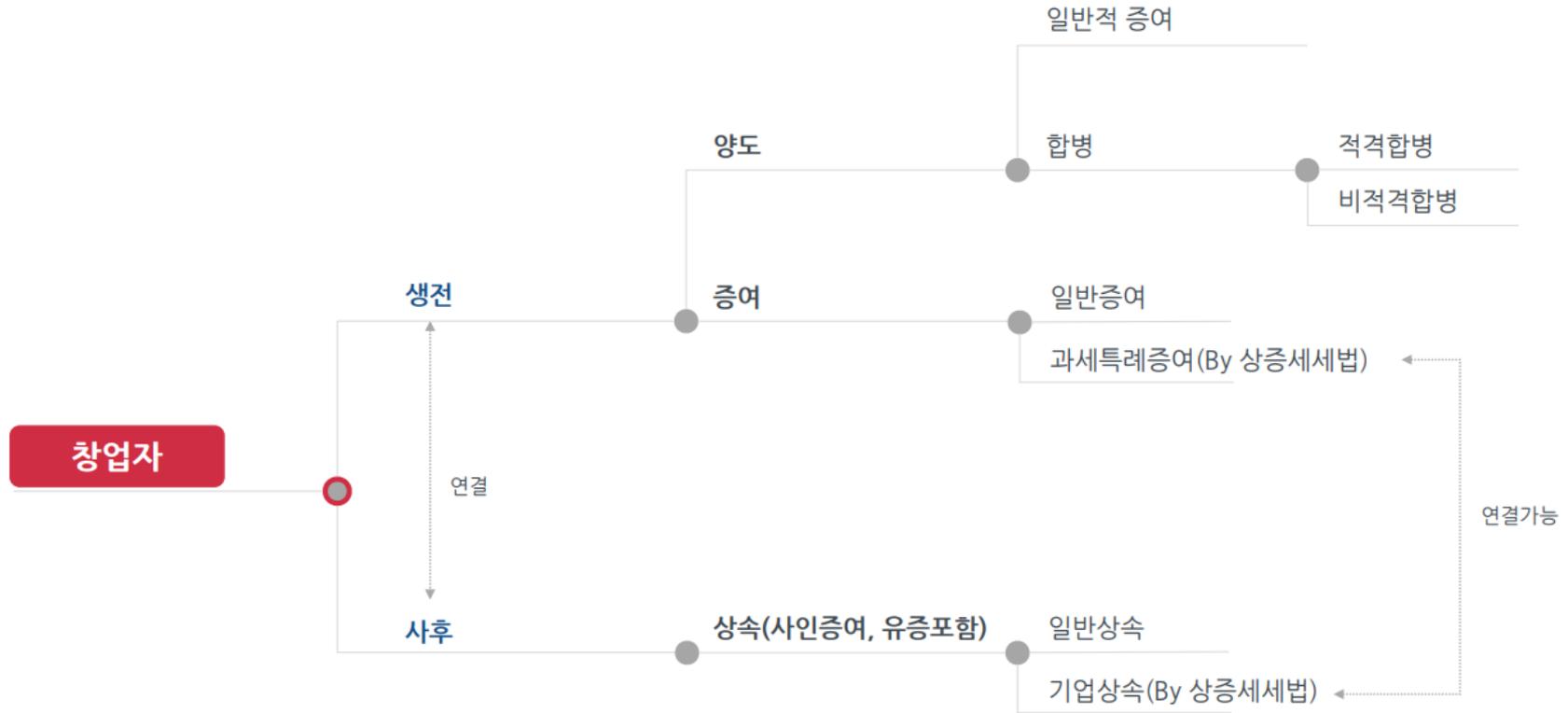


‘성공적 가업승계는 국민경제와 기업주 모두에게 매우 절실한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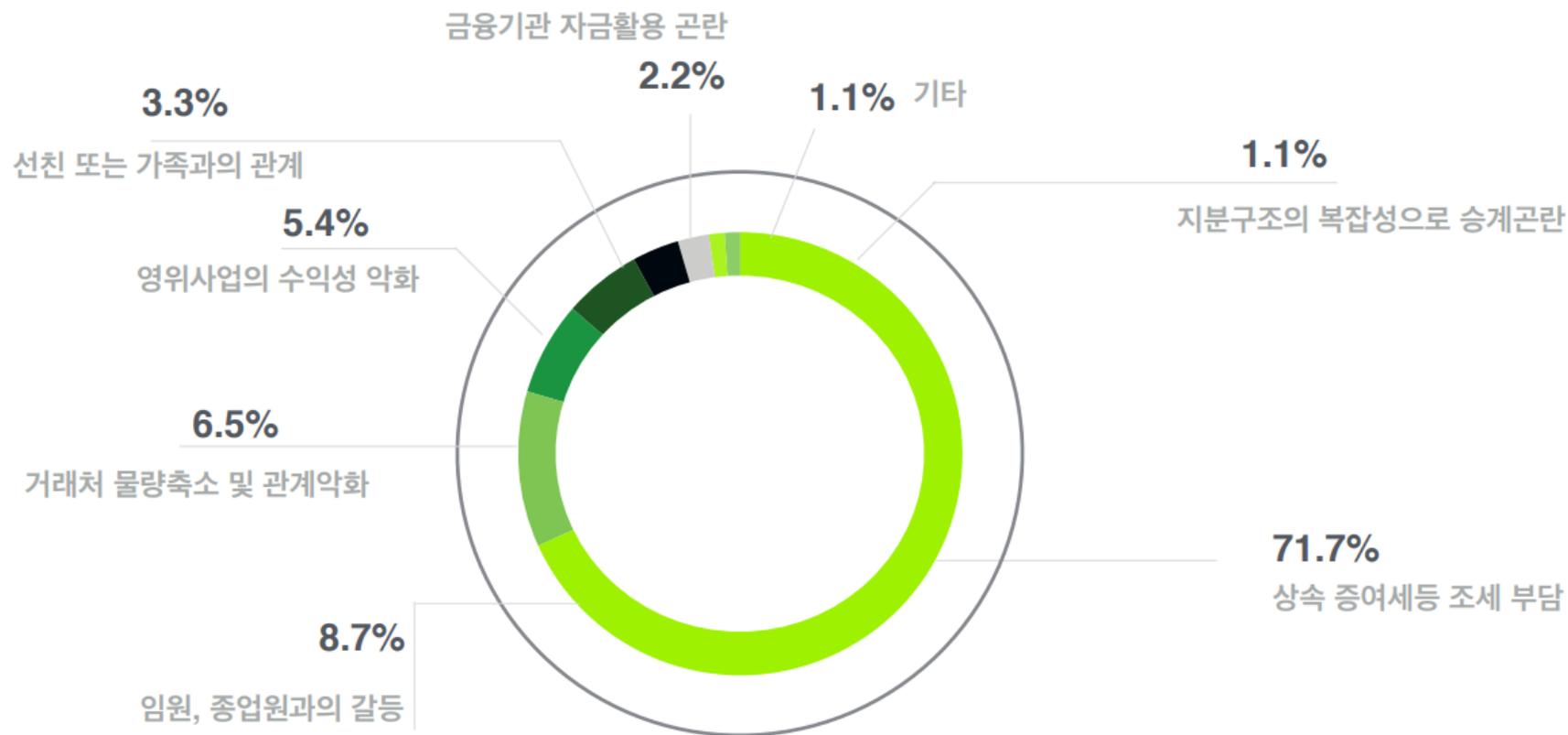


* MBO(management buy out) 경영자매수. 경영진이 중심이 되어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 사업부를 인수하는 것.

* 위 표의 내용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형태의 승계도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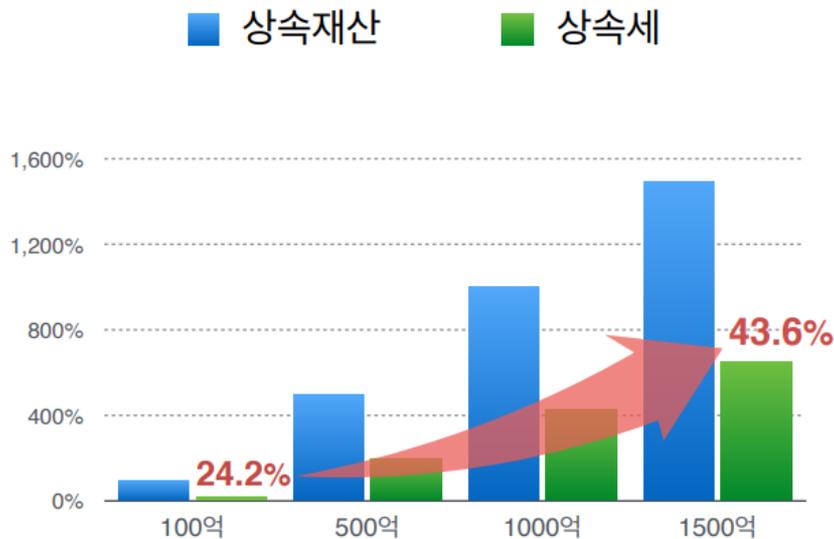


* 위 표의 내용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형태의 승계도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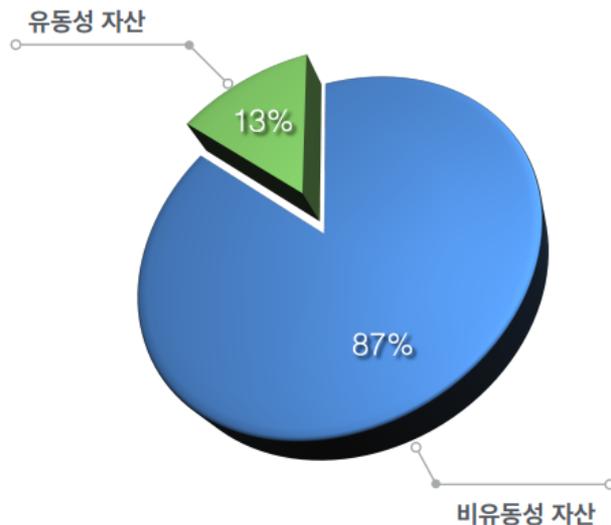
‘승계관련된 세금문제 해결은 성공적 가업승계의 필수조건’

국내 중소기업 오너 CEO들의 자산구조와 상속세



※ 기준 : 4인,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6개월 내 신고

총자산 규모별 자산구조



※ 비유동자산의 개념 :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 + 부동산

✓ 높은 주식가치평가 → 과도한 상속재산 평가 → 높은 상속세액 → 주식에 대한 물납제한
 → 부동산 및 금융재산으로 상속세 납세 → 유가족 생활에 심대한 타격



‘세금준비없는 가업승계는 유가족과 기업의 생존을 힘들게 만들 수 있다.’



비상장주식의 특성

=

무조건 상속이라고 말해도 무방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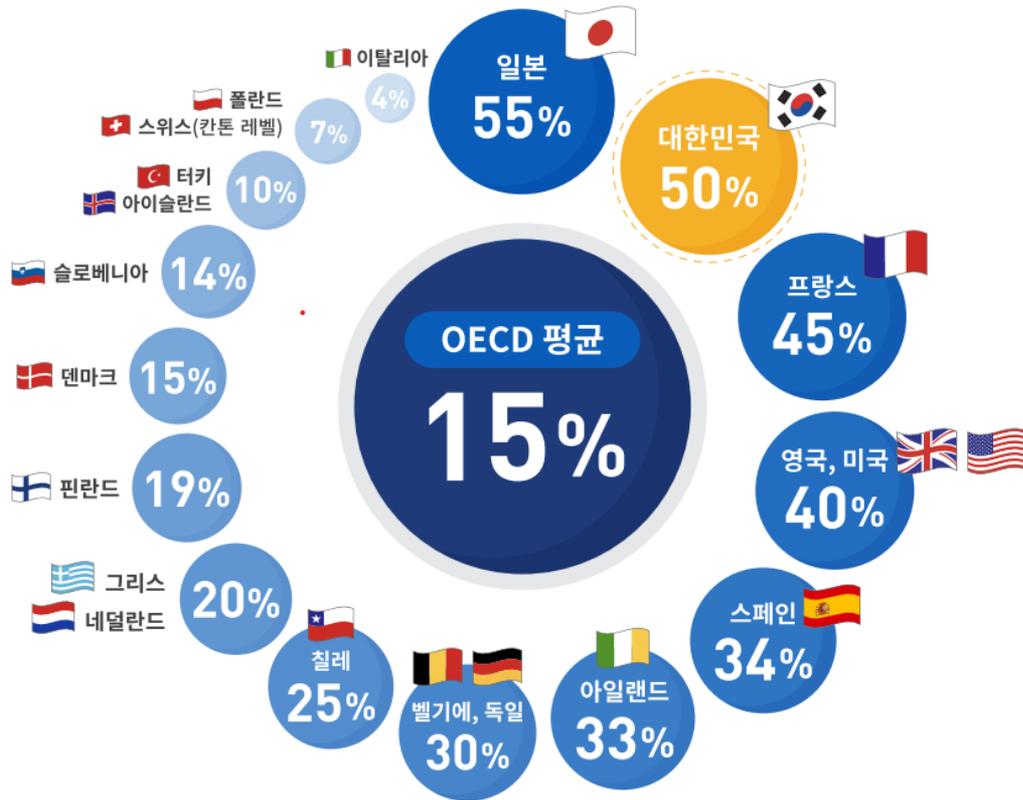


상속포기

=

아버지의 모든 재산과 시간의 포기

OECD 회원국 직계(直系) 상속에 대한 최고 세율



세율 0% 국가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웨덴, 헝가리, 체코, 리트비아,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지난해 9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용능부담 원칙과 과세 체계 합리화, 국제적 동향 등을 이유로 현행 상속세 제도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사진기자단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개요

	유산세	유산취득세
과세 방법	상속 재산 가액 전체를 기준으로 부과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는 재산 가액 기준으로 부과
채택 국가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19개국
장단점	세수 규모 크고 조세 행정 용이 적은 재산 받은 상속인의 세 부담 과중	상속인의 세 부담 감소, 조세 행정 복잡 유산의 거짓 위장 분할 등 변칙 상속 우려

(자료: 기획재정부)

1. 제도를 이용한 방법

1) 사전(死前) 제도

2) 사후(死後) 제도

2.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방법

1. 제도를 이용한 방법

1) 사전(死前) 제도

가업승계를 위한 증여세 과세 특례 (조특법 제 30조의 6)

■ 증여재산 공제액

20% 세율	60억 초과
10%단일 세율	60억 이하
10억원 공제	10억 초과

■ 증여자 요건



- 10년 중 특수관계자 포함 지분 **40%이상** 계속 보유
- 최대주주
- 거주자이고 60세 이상의 부모
- 증여자 사망 시 상속세과세가액의 계산

■ 수증자 요건

18세 이상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



대표이사 취임 및 승계

증여일 3개월 3년 이내 대표이사 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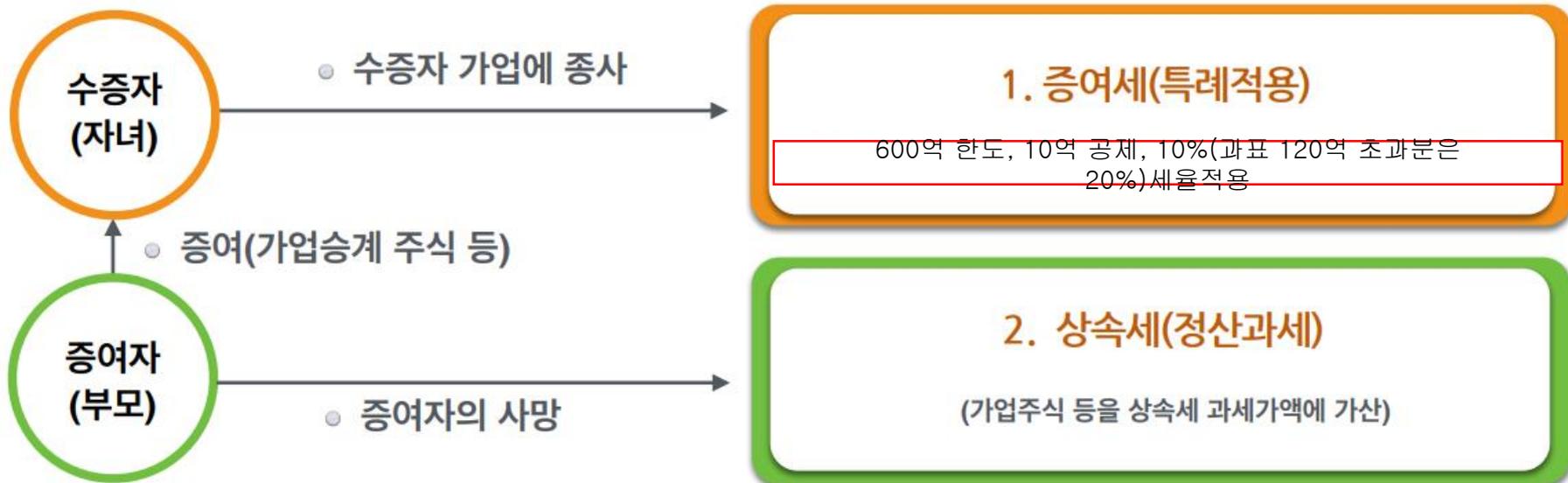
<사후관리 기간 5년>

<특례>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 한도로

(10년 이상 300억, 20년이상 400억, 30년 이상 600억)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구조



* 승계대상주식가액 : 증여하는 주식가액 × (1-사업무관자산비율)

1. 제도를 이용한 방법

1) 사전(死前) 제도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조특법 제 30조의 5)

■ 증여재산 공제액

창업으로 10명 이상 신규 고용 시	50억 한도
10% 단일 세율	30억 한도
5억원 공제	5억 초과

■ 증여자 요건



- 거주자이고 60세 이상의 부모
- 증여자 사망 시 상속세과세가액의 계산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을 증여

■ 수증자 요건

18세 이상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



■ 중소기업 창업	■ 창업자금 모두 목적 사용
-----------	-----------------

증여일

2년 이내

4년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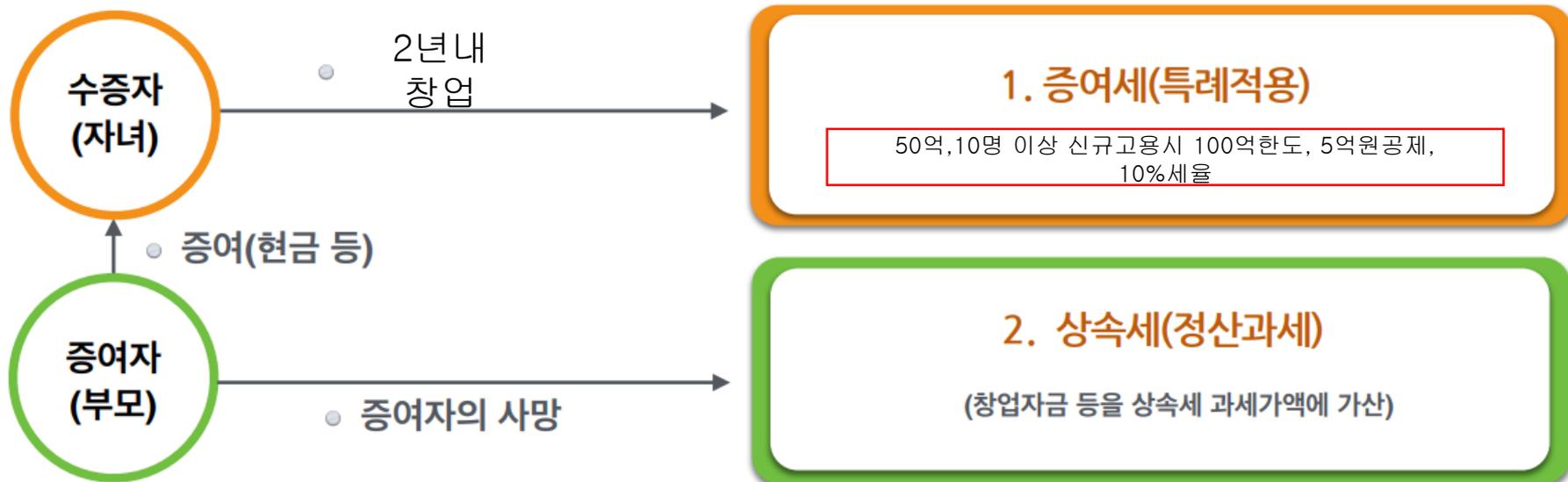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증여 불가**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주식 또는 출자지분 (주권상장법인 소액주주 제외)

기타자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시설물 이용권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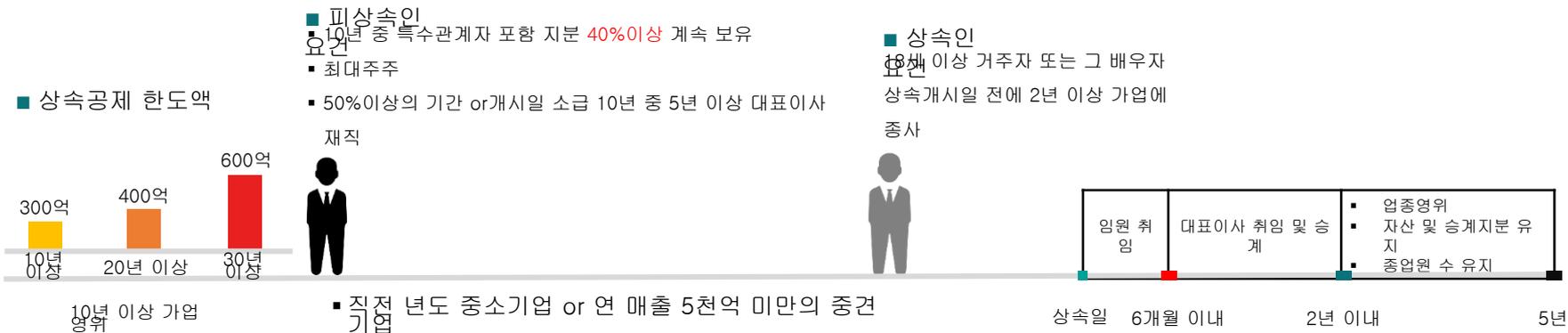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구조



1. 제도를 이용한 방법

2) 사후(死後) 제도

가업상속 공제 (상증세 18조의 2)



사후관리 기간 :
5년



가업 상속공제

제도명	과거		개정후		개정취지
가업상속공제 확대 (상증법 18조)	구분	기준	구분	개정기준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지원 (2023.1.1~) *23.1.1 현재 사후관리 중인 경우에도 개정규정 적용
	1. 적용대상	중소기업 중견기업 (매출액 4천억원미만)	1. 적용대상	중소기업 중견기업 (매출액 5천억원미만)	
	2. 공제한도	가업영위기간 10년~20년 : 200억원 20년~30년 : 300억원 30년이상 : 500억원	2. 공제한도	가업영위기간 10년~20년 : 300억원 20년~30년 : 400억원 30년이상 : 600억원	
	3. 피상속인 지분요건	최대주주&지분50% 이상 (상장법인30%) 10년이상 계속보유	3. 피상속인 지분요건	최대주주&지분40% 이상 (상장법인20%) 10년이상 계속보유	
	4. 사후관리	7년	4. 사후관리	5년	
	5. 업종변경	중분류 내 업종변경만 허용	5. 업종변경	대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6. 고용유지	정규직근로자의 수 또는 총급여액을 기준대비{매년 80% 이상} +{7년통상 100% 이상}	6. 고용유지	고용유지완화 5년통산 90% 이상	
	7. 자산유지	가업용 자산의 20% (5년내 내 10%) 이상 처분제한	7. 자산유지	가업용 자산의 40% (연수제한 없음) 이상 처분제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

제도명	과거		개정후		개정취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 확대 (조특법30의6 조)	구분	기준	구분	개정기준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지원 (2023.1.1~) *23.1.1 현재 사후관리 중인 경우에도 개정규정 적용
	1. 적용대상	중소기업 중견기업 (매출액 4천억원미만)	1. 적용대상	중소기업 중견기업 (매출액 5천억원미만)	
	2. 공제한도	과세가액 최대 100억원 5억 공제 30억이하 10% 30억 초과분은 20%	2. 공제한도	최대 600억 한도로 10억공제 60억이하는 10% 60억초과분은 20%	
	3. 증여자 지분요건	최대주주&지분50% 이상 (상장법인30%) 10년이상 계속보유	3. 증여자 지분요건	최대주주&지분40% 이상 (상장법인20%) 10년이상 계속보유	
	4. 특례조건	5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4. 특례조건	3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5. 사후관리	7년	5. 사후관리	5년	
	6. 업종변경	중분류 내 업종변경만 허용	6. 업종변경	대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

제도명	2023년		2024년		개정취지
	구분	개정기준	구분	개정기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 확대 (조특법30의6 조)	1. 적용대상	중소기업 중견기업 (매출액 5천억원 미만)	1. 적용대상	중소기업 중견기업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지원 (2024.1.1~) *24.1.1 현재 사후관리 중인 경우에도 개정규정 적용
	2. 공제한도	최대 600억 한도로 10억공제 60억이하는 10% 60억초과분은 20%	2. 공제한도	최대 600억 한도로 10억공제 120억이하는 10% 120억초과분은 20%	
	3. 증여자 지분요건	최대주주&지분40% 이상 (상장법인20%) 10년이상 계속보유	3. 증여자 지분요건	최대주주&지분40% 이상 (상장법인20%) 10년이상 계속보유	
	4. 특례조건	3년내 대표이사 취임	4. 특례조건	3년내 대표이사 취임	
	5. 사후관리	5년	5. 사후관리	5년	
	6. 업종변경	대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6. 업종변경	대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2. 기업승계 특례제도 3가지

1. 기업상속공제특례

■ 상속공제 한도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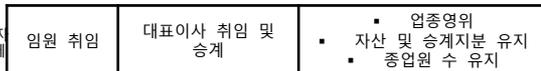
■ 피상속인 요건



- 10년 중 특수관계자 포함 지분 40% 이상 계속 보유
- 최대주주
- 50% 이상의 기간 or 개시일 소급 10년 중 5년 이상 대

■ 상속인 요건

18세 이상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가업에 종사



- 직전 년도 중소기업 or 연 매출 5천억 미만의 중견 기업

상속
일

6개월
이내

2년
이내

5년

2.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

■ 증여재산 공제액

20% 세율	120억 초과
10% 단일 세율	120억 이하
10억원 공제	10억 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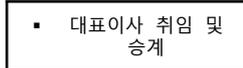
■ 증여자 요건



- 10년 중 특수관계자 포함 지분 40% 이상 계속 보유
- 최대주주
- 거주자이고 60세 이상의 부모
- 증여자 사망 시 상속세과세가액의 계산

■ 수증자 요건

18세 이상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



증여
일

3년
이내



3.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

■ 증여재산 공제액

창업으로 10명 이상 신규 고용 시	50억 한도
10% 단일 세율	30억 한도
5억원 공제	5억 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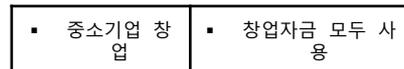
■ 증여자 요건



- 거주자이고 60세 이상의 부모
- 증여자 사망 시 상속세과세가액의 계산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을 증여

■ 수증자 요건

18세 이상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



증여
일

1년
이내

3년
이내